유럽위원회 디지털 부문 규제법안

2021.01.08 업데이트

Johan Vandromme

KIM & CHANG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개요

유럽위원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및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2개 법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규제 감독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u>배경</u>:

- **인식**
- **반영**
- **최적화**
- **현대화**

<u>전망</u>:

- **채택될 경우 유럽위원회의 권한 강화**
- **해결책을 넘어 예방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범위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서비스 규제를 목적으로 함

- 오래도록 개정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지침 제2000/31/EC호(e-Commerce Directive 2000/31/EC)를 현대화함
- EU 내 모든 디지털서비스를 대상으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 및 필터링하는 신규 의무를 도입하며, 이는 소비자와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 간 중개 역할을 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 회사에 적용됨. 또한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기본권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이용자 규모뿐 아니라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짐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적 영향력 규제를 목적으로 함

- 새로운 사전 규제를 도입하여,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제제 및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함
- 유럽위원회에 게이트키퍼를 식별하고 이들에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시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신규 규정에 대한 시스템적인 불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단을 도입함

디지털서비스법안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EU 전반적으로 통일된 일련의 신규 의무 도입

이용자 안전 강화

- 불법 상품(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 서비스 또는 온라인 콘텐츠 삭제 규정(혐오 발언 등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절차 등)
- 플랫폼이 이용자의 콘텐츠를 잘못 삭제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

플랫폼 투명성 증대

- 온라인 광고 및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투명성 관련 조치
- 대형 플랫폼이 시스템 오용 방지를 위해 리스크 기반 조치를 취할 의무 신설

플랫폼 투명성 증대

- 연구자들의 주요 플랫폼 데이터 접근 용이성을 증대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을 면밀히 조사할 권한 신설
- 불법 상품/서비스 판매자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온라인 마켓의 사업자 회원 이력 추적과 관련한 규정 신설
- EU내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공공 기관 간 혁신적인 협력 절차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대상인 서비스 제공자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EU 전반적으로 통일된 일련의 신규 의무 도입

디지털서비스법에는 온라인 생태계에서 다양한 온라인 업체의 역할, 규모 및 영향력에 따른 의무와 함께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

-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등록 대행기관 등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함
- **호스팅서비스**: 클라우드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함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마켓, 앱스토어, 공유경제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함
- **대규모 플랫폼:** 불법 콘텐츠 및 사회적 해악을 유포할 위험성이 있음. 4억 5천만 유럽 소비자의 10%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특정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디지털서비스법안

의무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됨

a) 행정 관련: EBDS 및 유럽위원회와의 직접 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일 연락 창구 설치
b) 투명성 관련: 불법 콘텐츠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의 삭제 및 무력화 조치와 관련된 보고 의무 준수

호스팅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특정 실사 의무가 적용됨. 특히 모든 온라인 플랫폼(소셜네트워크, 콘텐츠 공유 플랫폼, 앱스토어, 온라인 마켓, 온라인 여행 및 숙박 플랫폼 등)의 경우, 영세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됨

a) 민원 접수 및 시정 메커니즘, 재판 외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
b) 트러스티드 플래거(trusted flagger)와 협력 및 오용/남용 통지에 대한 조치
c) 관할 규제당국에 생명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중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제보
d) 제3자 공급업체의 자격 확인
e) 불법 콘텐츠 또는 이용약관에 반하는 정보의 삭제 및 무력화 조치에 대한 보고서 발표

디지털서비스법안

f) 이용자들이 광고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 및 관련 광고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알리고, 해당 이용자들을 광고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이용된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고 투명성 강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추가 의무

a) "서비스 기능 및 이용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 평가 및 완화
   i. 불법 콘텐츠 유포 (아동 성적 학대 또는 불법 혐오 발언 및 불법 행위)
   ii. 기본권(표현 및 정보의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등) 행사에 대한 영향
   iii. 공중 보건, 여론, 선거 과정, 공중 안전 및 소수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의 고의적, 조직적 수시 조작

b) 엄격한 투명성 보고 의무 준수, 규제당국, 독립 감사인 및 확인된 연구자에게 해당 규정 준수 현황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

c) 이용약관에 추천 시스템에 이용되는 주요 매개 변수(이용하는 경우)를 "명확하며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게" 명시

d) 광고 콘텐츠, 게시 및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저장소 구축 및 대중에 공개

e) **컴플라이언스** 담당관 "1인 이상" 임명 – 유럽 디지털서비스 위원회("EBDS") 및 유럽위원회와 협력 담당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집행

과징금: 위반의 정도, 지속 기간 및 재발 여부에 따라 지난 회계 연도 기준 회사 총 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됨. 과징금과 더불어 유럽위원회는 다음을 통해 규제할 수 있음

- (i) 지난 회계 연도 기준 평균 일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 (ii) 회사가 즉시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

집행 권한: 유럽위원회의 집행 권한은 다음을 포함함

- 민원, 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의 요청 또는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자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본 규칙에 따른 특정 규정을 조사, 집행 및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사 및 집행권" 포함
- 불시 단속 및 조사부터 회사의 "사업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 제공 의무화 및 직원 면담까지 권한 확대

디지털서비스법안

회원국의 새로운 역할

집행:

-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부분의 집행** 권한을 관할 EU 회원국 규제당국(부문 규제당국)에 위임함. 단, 유럽위원회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단독 권한을 보유함
- **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을 지정하여 유럽위원회와의 단독 연락 업무를 수행하고, 신규 자문 그룹인 **유럽 디지털서비스 위원회(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 "EBDS")**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EBDS에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규칙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은 해당 규정 위반을 시정할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시, 회사의 전세계 연간 수입 또는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디지털시장법안

목적, 법적 근거 및 범위

- 본 법안의 **목적**은 **공정하며 경합적인** EU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함임. 전문 10(recital 10)에 따르면 본 목적은 시장 내 왜곡 없는 경쟁의 보호를 표방하는 경쟁법의 목표를 **보완**하나 이와 **구분**됨
- 본 법안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14조(역내 시장)임. 이는 본 법안이 유럽 이사회 및 유럽 의회가 공동으로 입법하는 **일반** 입법 절차를 따르게 됨을 의미함. 법적 형식은 **규칙(Regulation)**형식으로, 일단 본 규칙이 시행되면 회원국이 시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 유럽위원회는 **완전한 통일 조치**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임.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경합적이며 공정한 시장을 보장할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에 **추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다만 다른 정당한 공공 이익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음
- **범위**: 디지털서비스법이 수평적이며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반면, 디지털시장법에서 파악되는 의무는 소위 "**게이트키퍼(gatekeeper)**"에만 특별히 적용됨. 이는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개념**임

디지털시장법 – 반독점 관점

목표, 법적 근거 및 범위

반독점(AA):

- 새로운 사전 규정(ex ante rule) 도입
-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이트키퍼>>에 적용
- 광범위한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규정
- 유럽위원회가 EU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통일된 규정
- 사후 경쟁법 규정도 계속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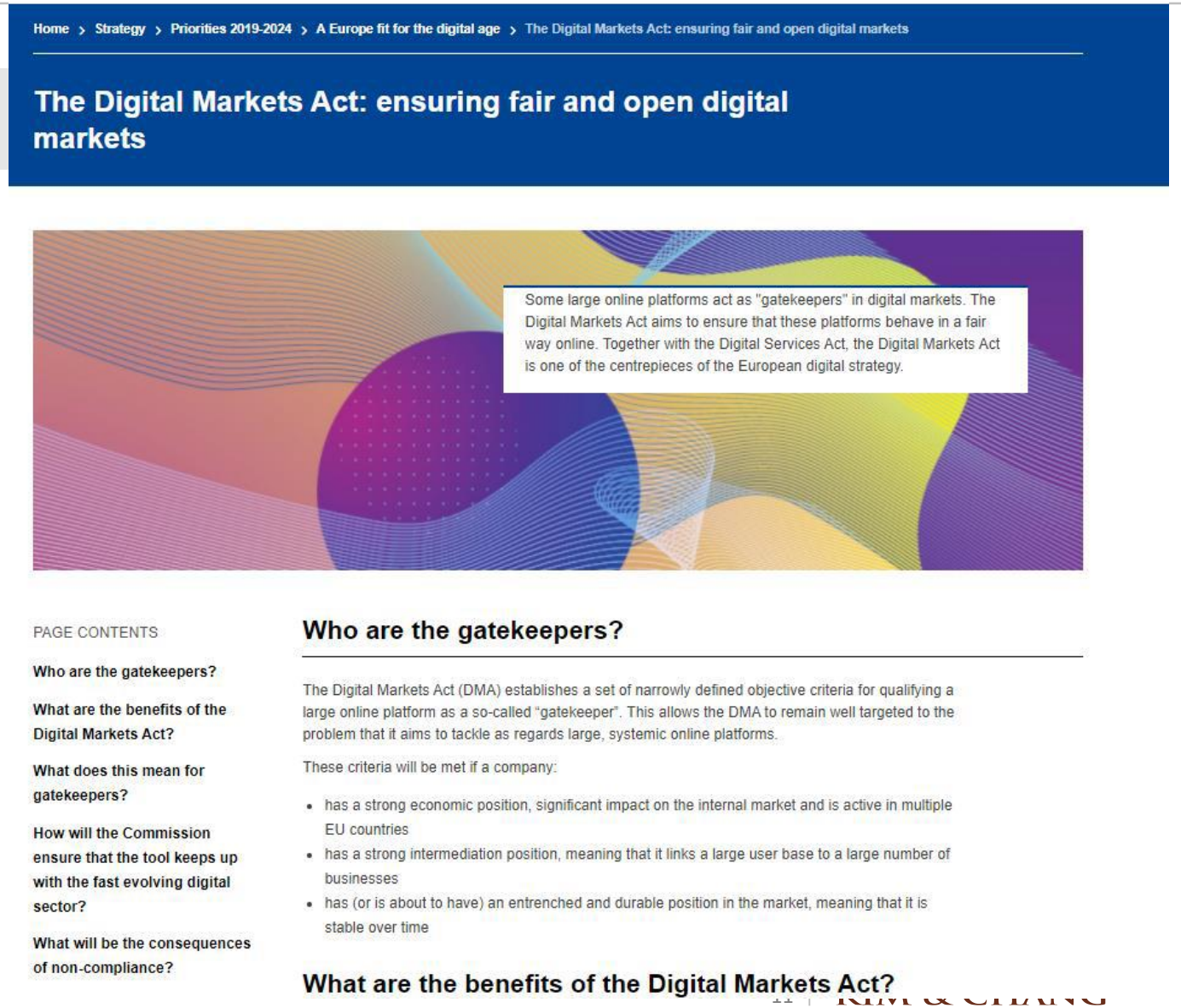

Home › Strategy › Priorities 2019-2024 ›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 The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

The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

Some large online platforms act as "gatekeepers" in digital markets. The Digital Markets Act aims to ensure that these platforms behave in a fair way online. Together with the Digital Services Act, the Digital Markets Act is one of the centrepieces of the European digital strategy.

PAGE CONTENTS

Who are the gatekeepers?

What are the benefits of the Digital Markets Act?

What does this mean for gatekeepers?

How will the Commission ensure that the tool keeps up with the fast evolving digital sector?

What will be the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

Who are the gatekeepers?

The Digital Markets Act (DMA) establishes a set of narrowly defined objective criteria for qualifying a large online platform as a so-called "gatekeeper". This allows the DMA to remain well targeted to the problem that it aims to tackle as regards large, systemic online platforms.

These criteria will be met if a company:

- has a strong economic position,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 and is active in multiple EU countries
- has a strong intermediation position, meaning that it links a large user base to a large number of businesses
- has (or is about to have) an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in the market, meaning that it is stable over time

What are the benefits of the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서비스법안/디지털시장법안

핵심 플랫폼 서비스

범위 :

- 온라인 중개 서비스 (마켓 플레이스, 앱 스토어 등)
- 온라인 검색 엔진
-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 번호 미부여 대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메시징)
- 운영체제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광고 서비스 (광고 중개 등)

유럽위원회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추가할 권한이 있음

디지털서비스법안/디지털시장법안

게이트키퍼란?

정성 평가 기준 –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됨	다음 양적 추정 기준(제3.2조)이 충족되는 경우 정성 평가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됨
▪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함	▪ 지난 3개 회계연도 중 유럽경제지역(EEA)의 연간 거래액 65억 **유로**를 달성하거나 지난 회계연도 평균 시가총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 시장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인 경우 및 ▪ **3개 이상 회원국**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사업이용자가 최종 고객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게이트웨이**를 운영함	▪ EU내 활성 최종이용자 수 **월 4,500만명 이상** ▪ 지난 회계연도 중 EU내 **활성 사업이용자 수 연 10,000명 이상**
▪ **그 운영에 있어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거나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개 회계연도 중** 상기 **중요 게이트웨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법안/디지털시장법안

게이트키퍼 지정

Φ: 게이트키퍼는 "사업체 및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열린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추가 의무를 부담함"

절차:

- 서비스 제공자 자체 평가 – **3개월** 이내에 유럽위원회에 통지
- 게이트키퍼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의무사항 이행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의무의 이행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예외:

- 특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양적 '반증허용추정(rebuttable resumption)'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유럽위원회는 시장조사 후 일부 요건만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게이트키퍼의 의무 - "자율 이행" 의무 (제5조)

불공정행위 또는 시장 경쟁성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게이트키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의무사항:

- 사업 이용자가 게이트키퍼를 통해 제공되는 바와 다른 가격 또는 조건으로 플랫폼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 (*MFN 조항 금지*/– 제5.b조)
- 최종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더 많이 (더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며, 사업 이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면서 생성한 데이터에 효과적이며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제5.c조)
- 광고주 및 퍼블리셔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광고 및 게이트키퍼가 제공한 관련 광고 서비스 각각에 대해 광고주/퍼블리셔가 지불한 금액 관련 정보 (및 퍼블리셔에게 지급된 보수) (제5.g조)

금지행위:

- 최종 이용자가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 따라 선택권을 안내 받고 동의를 제공한 경우가 아닌 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게이트키퍼의 다른 서비스 또는 제3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제5.a조)
- 사업 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국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제5.d조)
-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게이트키퍼의 신원 확인 서비스를 이용, 제공 또는 상호 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5.e조)
- 사업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접근, 가입 또는 등록하는 조건으로 특정 게이트키퍼 서비스를 구독 또는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5.f조)

게이트키퍼의 의무 - "더욱 특정될 수 있는 의무"(제6조)

제6조 제1항은 게이트키퍼에게 부과되는 11가지 의무 유형안을 규정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의무사항: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선탑재된 소프트웨어 또는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제6.b조; (*번들링(Bundling): Microsoft 사례의 영향?*)
- 제3자 앱 또는 앱스토어[특정 카브아웃(carve-out) 대상인 경우]의 설치 및 이용을 허용하며, 최종 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운영체제 내에서 접근하는 앱/서비스 간 전환 및 가입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 제6.c조
- 사업이용자 및 보조 서비스 제공자에 게이트키퍼의 보조 서비스에 이용되는 운영체제에 대한 접근 및 상호 운용을 허용함 – 제6.f조 (*Apple에 대한 상호 운용 가능성이 클 것인가?*)
- 광고주/퍼블리셔에 게이트키퍼의 성과 측정 도구 및 광고주/퍼블리셔가 광고 인벤토리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제6.g조
- 사업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면서 생성한 데이터에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간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제6.i조

금지행위:

- 사업이용자가 취득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한, 해당 데이트를 해당 사업이용자와의 경쟁에 이용하는 행위 (제6.a조) (데이터 사일로(*data silos*) –*Amazon 조사의 영향?*)
- 게이트키퍼 또는 동일 사업에 속하는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순위를 다른 제3자의 상품/서비스보다 더욱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러한 순위에 FRAND 조건을 적용하여야 함 (– 제6.d조) (*자기우대 – 2017년 Google 쇼핑 사건의 영향?*)
- 최종이용자에 대한 ISP 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최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앱 및 서비스 간에 전환하거나 가입할 능력 제한하는 행위 (– 제6.e조);
- 사업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의 행위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이동성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속적인 실시간 접근 등 최종이용자에게 GDPR에 따라 데이터 이동성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해야 함 (제6.h조)

디지털시장법안

시장 조사 기능

- 지난 여름, “새로운 경쟁법상 규제 수단(New Competition Tool, NCT)” 초안/논의의 일환으로 최초 발표됨
- 해당 제안이 유럽위원회가 광범위한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시정 조치를 부과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쟁법상 규제 수단”에 대한 초기 요구안을 완화하였다는 점이 중요함. 해당 제안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현재 **철회**된 상태임
- 대신, 나머지 부분이 디지털시장법에 “편입”되었으며(Vestager 부의장(EVP)의 발언), 유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시장 조사**를 수행할 융통성(및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음
  i. 양적 추정 기준에 미달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선제적으로 조사 (제15조)
  ii. 조사 대상 사업자에 대한 행태적 및/또는 구조적 시정 조치 부과 여부 고려를 포함하여 게이트키퍼의 의무사항 및 금지 행위를 조직적으로 위반한 행위 조사 (제16조)
  iii.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범위를 수정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디지털시장법상 금지되어야 하는 새로운 행위를 추가 (제17조)

기타

합병 통지 시스템 – 완전히 요건을 갖춘 검토 절차는 아님

- 게이트키퍼는 또한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또는 여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하여 계획 중인 합병 또는 인수에 대하여, EUMR 또는 EU 회원국의 합병 통제 규정상 해당 거래의 신고 의무 여부와 관계 없이, 유럽위원회에 항시 알려야 함
- 해당 의무는 유일한 정보 제공 의무이나, 해당 조항은 유럽위원회가 EU 합병 규칙(EU Merger Regulation) 제22조에 따른 이송 메커니즘(referral mechanism)을 이용하는 안과 함께, 유럽위원회가 달리 관할권 외(또한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 속하는 기술 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할 여지를 줌

조사 및 집행 권한

- 유럽위원회는 엄격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효과적인 규정 시행을 선도함. 유럽위원회는 반독점법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보유함
  - 제16조 (조직적 위반에 대한 시장 조사)
  - 제19조-제21조 (정보 요청, 면담, 진술 청취, 현장조사)
- 위반에 따른 결과
  - 제22조 (임시조치: 사업 이용자/최종 이용자에 대한 심각하며 회복불가능한 피해의 긴급한 위험성 방지)
  - 제23조 (시정안)
  - 제26조 (과징금: 전세계 연 매출액의 10%)
  - 제27조 (이행강제금: 전세계 일 매출액의 5%)
- 유럽위원회는 **조직적으로** 제16조를 위반하는 "**상습범**"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상당한 신규 집행권을 가짐. 5년 기간 중 유럽위원회로부터 3건 이상 위반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게이트키퍼는 조직적인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됨
  - 이러한 경우, 유럽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 대해 시장 조사를 개시하고 행태적/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조치가 없는 경우, 또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조치가 매각(divestment)에 비해 게이트키퍼에 더 부담이 될 경우, 구조적 조치만 부과될 수 있음

디지털시장법과 회원국의 규정 간 관계

- 유럽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 본 법안은 유럽위원회를 지원하는 "디지털시장 자문위원회(Dig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각국 당국에 여지를 많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시장법안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 114조(즉, 단일 시장의 기능)로, 전적으로 EU 역내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를 단일화하고자 함이며, 이에 상응하는 국가별 규정의 적법성에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함
-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경합적이며 공정한 시장을 보장할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에 **추가** 의무 부과할 수 없음. 다만 다른 정당한 공공 이익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음
- 이로 인해 입법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회원국들이 논의 후 각료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일환으로 공동 채택할 예정)
- 일부 회원국은 플랫폼에 대한 국가별 규정 초안 작업 중임(독일 등의 경우 초안 및 논의는 마쳤으나 채택하지는 않은 상태임)

디지털서비스법안/디지털시장법안

입법안

공동 의사결정 절차:

- 차트로 설명(준비 예정)

주변 분위기

- EU 법안은 다른 관할권(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의 유사한 움직임과 함께 지지를 받고 있음
- 로비 노력/ 치열한 논쟁/ 집중적인 협상 등을 통해 개정될 수 있음
-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 - 2023년 이전에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장애물 및 어려움:

- 테크/플랫폼 산업에서 부정적인 시각 존재 가능성
- 유럽의회와의 불일치 또는 유럽의회 내부적 불일치
- 회원국 간 또는 회원국 내 다양한 시각 존재
- 지정학적 변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주요 시사점 - 디지털시장법

철학적 시사점:

- 지난 수년간 경쟁 분야에서 전세계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쟁상 위험에 대처하기에 현 경쟁 관련 규제 방안이 불충분(즉 단편적이며 사후대응만 가능)하다는 논쟁이 있어 왔으며, 본 법안은 이러한 논쟁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함
- 역동적인 테크 시장에서 좀 더 진취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디지털시장법은 에너지 또는 전기통신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사전적 경쟁 규제 방안과 유사한 형태라 볼 수 있음

실무적 시사점:

- 법 집행은 각국 규제당국보다는 유럽위원회의 소관이 될 것임. 유럽위원회는 신고사항 조사권, 정보 요청권, 현장 조사 실시권 등 디지털서비스법상 규제자에 허락되는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누리게 됨
- 제재/시정조치의 범위가 디지털서비스법보다 광범위함: 유럽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전세계 연 매출 총액의 최대 10%(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직적인 위반의 경우, 일부 사업 매각 등 행태적 또는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